

#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1994. 11. 29

내무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달서구청장
- 나. 제출일자 : 94. 11. 23
- 다. 회부일자 : 94. 11. 24
- 라. 상정일자 : 94. 11. 28

## 2. 제안설명요지 (설명자 : 재무과장 김낙흠)

### 가. 제안이유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인하하고 공유재산의 매각시 분할 납부 가능 조항을 추가로 규정하며, 대부료·사용료·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지 대부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나. 근거법령

지방재정법 제197조, 도시재개발법 제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제95조, 제100조

### 다. 주요골자

-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기간 분할납부 가능 조항을 추가로 규정함.  
(안 제22조)
-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함. (안 제23조)
- 대부료등의 연체요율을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 이자율 적용에서 연 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대한 연 15% 연체요율을 규정함(안 제28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백창기)

-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197조, 도시재개발법 제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제95조, 제100조임.
- 본 조례 제7조 제2항 제2호의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중 "매각"을 "사용허가"로 용어 변경
- 제11조(관리 및 처분) 제3항 제2호의 시가 3백만원이하의 기타재산중 "3백만원"을 "1천만원"이하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재산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 제13조(사용허가기간) 제2항인 기부채납재산에 대하여는 기부재산의 사용허가 기간까지 사용허가 할 수 있다는 삭제하려는 것임.
-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제1호 "시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를 "제39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개정하고
- 제22조 제2호의 제1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내용이 제1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려는 것임.
- 제22조 제5호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고발생 경우, 제6호 매각재산이 구가 필요로할시 재산명도일을 연장할 경우, 제7호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 5·6·7호를 신설
- 제23조 제1항 단서중 "새마을사업"을 "취락개선사업"으로 하고 제2항중 경작목적으로 사용시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로 함은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하며
- 제28조 대부료등의 연체요율을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약 21%) 적용에서 연 15%로 규정함으로 약 4~5%인하 하려는 것임.
- 제39조의 2(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조례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적용이 잘못된 동법 제95조 제2항 "제24호"를 "제25호" 수의계약호로 조정코자 하는 것임.
- 본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 준칙에 의거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한 것이며 개정조례 전반적인 사항을 볼 때 공유재산매각대금 분할납부 조항확대,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연체요율 및 대부료 인하 등 관리청과 계약에 있어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조례내용 미비사항을 보완한 것이므로 본 조례개정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다고 생각됨.

4. 토론요지

- 시중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이 변동(하향조정)될 시 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운영에 신축성을 기할 것.

5. 수정안 요지

- 안 제23조제1항의 단서조항 "새마을사업"을 "취락개선사업"으로 개정하였으나 "새마을취락개선사업"으로 수정토록 함.

6.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반대 : 없음.

7. 첨부 :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다음 페이지에 계속)

##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중 "매각"을 "사용허가"로 한다.

제11조제3항제2호중 "3백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13조중 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를 삭제하며, 제4호 다음에 "제5호 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9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천재·지변·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6.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7.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구청장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3조제1항 단서중 "새마을사업"을 "새마을취락개선사업"으로 하고 제2항중 "1000분의 150"을 "1000분의 50"으로 "1000분의 25"를 "1000분의 8"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금)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제39조의2중 "영 제95조제2항제24호"를 "영 제95조제2항제25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7조(공유재산심의회)</p> <p>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p> <p>3. (생략)</p>	<p>제7조(공유재산심의회)</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 style="padding-left: 2em;"><u>사용허가</u>.....</p> <p>3. (현행과 같음)</p>	<p>제7조(공유재산심의회)</p> <p>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p> <p>.....</p> <p>1. (개정안과 같음)</p> <p>2. (개정안과 같음)</p> <p>3. (개정안과 같음)</p>
<p>제11조(관리 및 처분)</p> <p>①~②(생략)</p> <p>③ (생략)</p> <p>1. (생략)</p> <p>2. 시가 <u>3백만원</u>이하의 기타 재산</p> <p>④ (생략)</p>	<p>제11조(관리 및 처분)</p> <p>①~②(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u>1천만원</u>.....</p> <p>.....</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1조(관리 및 처분)</p> <p>①~②(개정안과 같음)</p> <p>③ (개정안과 같음)</p> <p>1. (개정안과 같음)</p> <p>2. (개정안과 같음)</p> <p>.....</p> <p>④ (개정안과 같음)</p>
<p>제13조(사용허가기간)</p> <p>① (생략)</p> <p>② <u>기부채납재산에 대하여는 기부재산의 사용허가기간까지 사용허가할 수 있다.</u></p>	<p>제13조(사용허가기간)</p> <p>①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제13조(사용허가기간)</p> <p>① (개정안과 같음)</p> <p><u>(개정안과 같음)</u></p>
<p>제22조(매각대금의분할납부 등)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납부가</p>	<p>제22조(매각대금의분할납부 등) .....</p> <p>.....</p> <p>.....</p>	<p>제22조(매각대금의분할납부 등) (개정안과 같음)</p> <p>.....</p> <p>.....</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곤란하여 분할납부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 ..... .....</p>	<p>..... ..... .....</p>
<p>1. 시에 소재하는 <u>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u></p>	<p>1. <u>제39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1. <u>(개정안과 같음)</u></p>
<p>2. <u>제1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u></p>	<p>2. <u>&lt;삭 제&gt;</u></p>	<p>2. <u>(개정안과 같음)</u></p>
<p>3. ~4. (생략)</p>	<p>3. ~4. (현행과 같음)</p>	<p>3. ~4. (개정안과 같음)</p>
<p>    &lt;신 설&gt;</p>	<p>5. <u>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u></p>	<p>5. <u>(개정안과 같음)</u></p>
<p>    &lt;신 설&gt;</p>	<p>6. <u>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 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u></p>	<p>6. <u>(개정안과 같음)</u></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 영 제92조의 규정 에 의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 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 다. 다만, 공용, 공공용의 목적과 <u>새마을 사업</u>에 사용 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 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 로 한다.</p> <p>② 영 제92조의 제3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 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 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p>	<p>7. <u>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 지중 구청장이 도시재개 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 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 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 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 에게 매각하는 경우</u></p> <p>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 …………… …………… …………… …………… …………… …………… …<u>취락개선 사업</u>…………… …………… …………… …………… …………… ② …………… …………… …………… ……………</p>	<p>7. <u>(개정안과 같음)</u></p> <p>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 …………… …………… …………… …………… …………… …………… …<u>새마을 취락개선 사업</u>…………… …………… …………… …………… ②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u>1000분의 150</u>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u>1000분의 25</u> 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p> <p>③~⑦ (생략)</p>	<p>..... .....<u>1000분의 50</u>..... .....<u>1000분의 8</u>중..... .....</p> <p>③~⑦ (현행과 같음)</p>	<p>③~⑦ (개정안과 같음)</p>
<p>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 요율) <u>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를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 요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회계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 이자율을 준용한다.</u></p>	<p>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 요율) <u>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u></p>	<p>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 요율) <u>(개정안과 같음)</u></p>
<p>제39조의2(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95조제2항 <u>제24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u></p> <p>①~③ (생략)</p>	<p>제39조의2(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95조제2항 <u>제25호에 의한</u>..... ..... .....</p> <p>①~③ (현행과 같음)</p>	<p>제39조의2(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개정안과 같음)</p> <p>①~③ (개정안과 같음)</p>